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502호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하고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제16조의2제1항)
-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 하는 방식에서
 ⇒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」토록 함(제20조제2항)

$$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-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(제22조제5항)

공공기관장 인사관리제도개선방안(안)에 대한 의견수렴결과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제16조제2항, 제20조제1항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의 제목 "(토요일전일근무제)"를 "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"로 한다.

제16조제2제1항중

"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"를 "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"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$$\circ 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\text{12월 - 당해연도 휴직기간(개월)}}{\text{12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6조의2(토요일전일근무제)</p> <p>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</p> | <p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①----- -----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</p> |
|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/p> <p>①결근일수·휴직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들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제20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</p> <p>①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들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 data-bbox="111 244 246 273">< 신설 ></p> <p data-bbox="106 1124 495 1253">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·조퇴·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</p> | <p data-bbox="536 249 919 830">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,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,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</p> <p data-bbox="541 889 894 1043">○ 휴직자의 연가일수 = $\frac{12\text{월} - 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</p> <p data-bbox="531 1124 919 1264">③..... 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④.....</p> |
| <p>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22조(공가).....</p> |
| <p>1 내지 4 (생략)</p> | <p>1 내지 4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5. <u>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</u></p> | <p>5. <u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</u></p> |
| <p>6 내지 8 (생략)</p> | <p>6 내지 8 (현행과 같음)</p> |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